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일반)

- 상무부 해관총서 연합공고 2016년 제84호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 발포)

발포날짜: 2017년 3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을 발포한다. 2017년 1월 1일로부터 집행한다.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2015년 12월 10일에 발포한 <2016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은 동일자로부터 폐지한다.

<자동수입 허가관리 제도란?>

“자동수입 허가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붙임의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 상의 품목은 통관을 보다 민감하게 요구하는 품목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의 수입제품들은 “자동수입허가증”이라는 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합니다. 즉, 통관 시 추가로 하나의 서류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중국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기업이 중국 상무부에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면 및 우편신청 모두 가능)

* 붙임1: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841629.htm>

2. (검역)

- 식품첨가제 신제품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등에 관한 공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기구조직의 전문가들이 식품첨가제 신제품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식품용 향료 신제품 Ethyl linalyl ether 그리고 식품첨가제 β -카로틴의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하고 통과한다.

* 붙임2: 1. 식품첨가제 신제품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2. 식품용 향료 신제품 Ethyl linalyl ether

3. 식품첨가제 β -카로틴의 사용범위 확대

출처: <http://www.nhfpc.gov.cn/sps/s7890/201703/a93d8e2583414a84a4527fe6c43bbbd0.shtml>

3. (라벨링)

☐ 변경사항 없음

4. (수출현안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2000 10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2 2000 10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냉동
	0206 2100 00 0206 2200 00 0206 29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품목	HS코드	비고
돼지고기	0203 1200 10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3 2190 10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냉동
	0206 4100 00 0206 49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양고기	0204 1000 00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3000 00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냉동 면양류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0206 9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닭고기	0207 1200 00 0207 1411 00 0207 1419 00	냉동
	0207 1421 00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냉동 내장 등 기타부위
신선우유	0401 1000 00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10 00	영유아용 조제분유

품목	HS코드	비고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식용유	1507 1000 00 1507 9000 00	대두유
	1509 1000 00 1509 9000 00 1510 0000 00	올리브유
	1511 1000 00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팜유
	1514 1100 00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겨자유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카사바	0714 1010 00 0714 1020 00 0714 1030 00	
보리	1003 1000 00 1003 9000 00	
수수(고량)	1007 1000 00 1007 9000 00	
옥수수 주조	2303 3000 10	
설탕	1701 1200 90 1701 1300 90 1701 1400 90 1701 9100 90 1701 9910 90 1701 9920 90 1701 9990 90	

품목	HS코드	비고
담배	2401 1010 00	담배
	2401 1090 00	
	2401 2010 00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4813 100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적색: 2016년 대비 HS코드 변경

<붙임2>

1. 식품첨가제 신제품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영문명칭: Glycine (Glycolonitrile method)

기능분류: 증미제, 식품용 향료

사용량 및 사용범위: GB2760중에 있는 글리신에 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함

2. 식품용 향료 신제품 Ethyl linalyl ether

영문명칭: Ethyl linalyl ether

기능분류: 식품용 향료

사용량 및 사용범위: 식품용 향료로 배합하고 나서 각종 식품(GB2760-2014 표B.1중의 식품 분류 제외)에 사용 요구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3. 식품첨가제 β-카로틴의 사용범위 확대

명칭	기능	식품분류 코드	식품명칭	최대사용량(g/kg)	비고
β-카로틴	착색제	08.02.01	조리육제품(조미료를 첨가한 생육)	0.02	-